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0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3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과장 김남정(043-870-5520), 임완빈 연구관(5522)

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

- 중국 등 해외 시험·인증 애로 현장 컨설팅 진행! -

-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를 계기로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TBT 홍보관」을 운영한다.

* '15.10.14.(수)~17.(토) 4일간, 일산 킨텍스, 800여개 업체 참여 약 6만여명 참관 예정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의 제반 장애요소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TBT의 경우, 각국이 자국산업의 보호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예산, 인식부족 등으로 정보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TBT 통보건수 : ('12년) 2,197건→('13년)2,142건→('14년)2,239건

- 「TBT 홍보관」에서는 주요 사례 위주로 TBT 정보의 입수과정부터 최종 조치에 이르기까지 TBT 대응 전주기를 수출기업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통상, 표준·인증 등 전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

- 특히, TBT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까다로운 시험·인증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진단 후 해결책을 제공한다.

-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TBT 대응체계와 지원절차, TBT관련 R&D 사업 등을 알리고 TBT 종합정보포털(KnowTBT.kr) 및 비관세장벽포털(ntb-portal.or.kr) 등 정보마당도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TBT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별 「TBT 홍보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및 TBT 컨소시엄의 협·단체를 통한 중소기업 홍보 정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장 설문조사 실시(TBT 대응 서비스 경험자 및 무경험자 대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김남정 과장(☎043-870-5520), 임완빈 연구관(☎043-870-5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TBT 홍보관」 운영 내용

1. TBT 대응사업 소개 및 TBT 대응사례 홍보

- 무역기술장벽(TBT)의 정의, 중요성, 구체적인 예
- TBT 중앙사무국 역할 및 TBT 컨소시엄 지원체계
- TBT 대응지원서비스, KnowTBT 포털 및 TBT 대응사례 소개

홍보 패널(안)

무역기술장벽(TBT)의 정의

-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무역에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Specific requirement: 기술규정 혹은 표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로 시험, 검사 및 인증 등이 포함

무역기술장벽(TBT)의 중요성

-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전통적인 관세장벽이 감축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

<연도별 TBT 통보 건수: 2014년 최대 2,239건>

무역기술장벽(TBT)의 구체적인 예

- ①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
- ②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이에 대응
- ③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 ④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 규정의 부합성 부재
- ⑤ 관료주의적 절차

TBT대응 컨소시엄 구성도

- TBT중앙사무국은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금속 등 19개 협단체와 시험기관 등 8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TBT대응 컨소시엄을 운영

TBT중앙사무국

- (1) TBT 통보 (2) TBT 정보제공 (3) TBT 분석결과
- (4) TBT 통보 (5) TBT 통보 (6) TBT 통보

협회기술규제 종합 포털(KnowTBT 포털)

www.knowtbt.kr

- 자료정보 (TBT통보문 자동이메일): 회원제 운영
- 통보문(번역본), 규제원문, 기술규제요약서 제공
- 무역기술장벽 상시 애로 접수

사우디아라비아, 가전제품 냉매 사용 규제

2014년 6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R-22, R-123 냉매 사용이 금지된다는 규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는 WTO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TBT 중앙사무국이 WTO 회원국의 TBT 현황을 조사하면서 새로 밝혀낸 정보였다. 통 규제가 시행되면 R-22, R-123 등을 냉매로 사용한 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공식서한(2014년 9월)과 WTO TBT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자회의를 통해 정확한 규제 시행일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냉창고, 분리형 에어컨의 규제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규정은 추가 조사 후 답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규 제 명: Saudi Arabia refrigerant regulations
- 관련부처: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목 적: 환경보호
- 대상제품: 냉창고, 에어컨, 압축기, 제빙기 등
- HS 코드: 8414.30, 8415, 8418
- 규제내용: 프레온 22, 프레온 123 등을 냉매로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인증서 발행을 중단
- 시 행 일: '15. 1. 1(예정)
- 수출액: 동향(천달러): '12년(167,000), '13년(210,000), '14년(175,000)
- 무역협회 기준

2. 현장 TBT 컨설팅

- 내용 : 해외시험 및 인증획득 관련 애로사항 현장 컨설팅
- 일정 및 전문가

시간/요일	수	목	금	토
오전(09:30~12:00)	KTR 해외인증전문가		우리기술교역(컨설팅전문기업)	
오후(14:00~16:30)	우리기술교역(컨설팅전문기업)		CCIC KOREA(중국인증전문가)	

3. TBT 대응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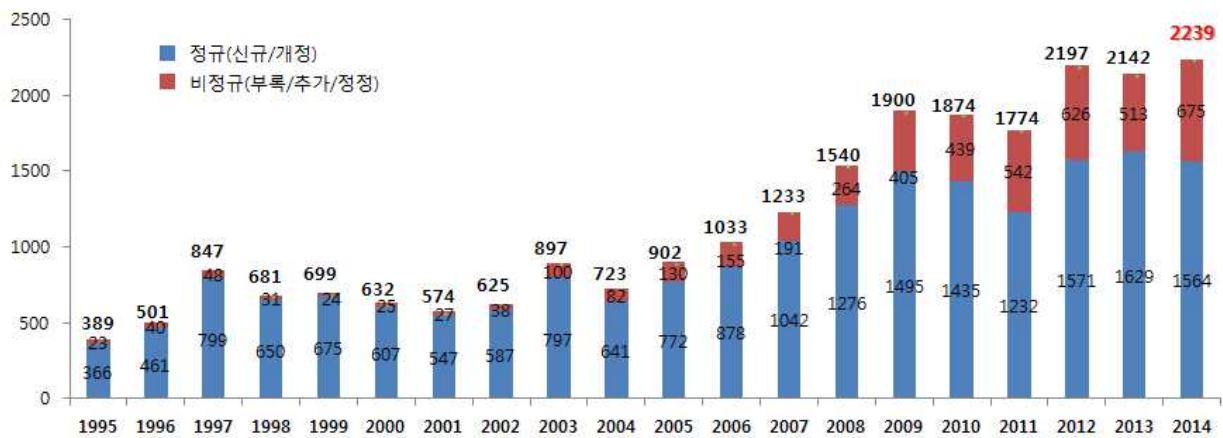
- 대상 : TBT 대응서비스경험자(60명), 무경험자(40명) 총 100명 대상

참고2

연도별 WTO TBT 통보문 동향

□ 통보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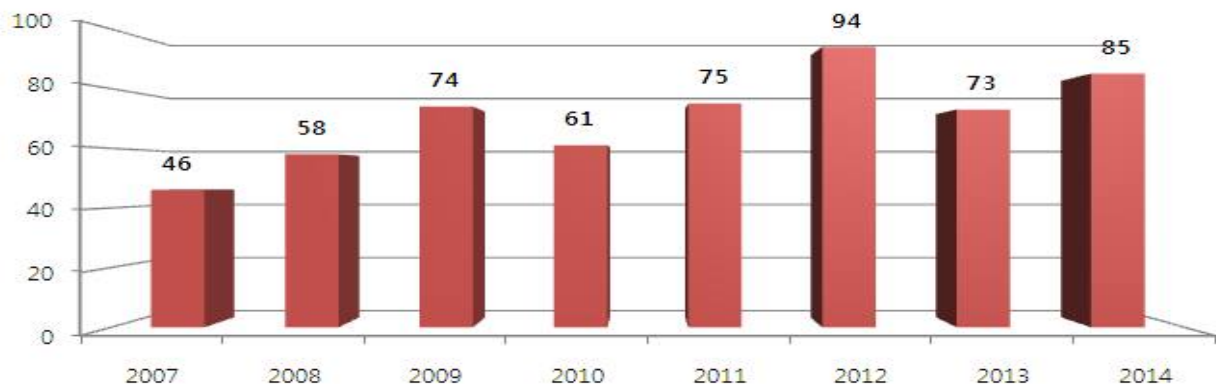
- 1995년부터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통보 건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239건을 기록
- 2015년 상반기에는 679건의 정규 통보문을 포함하여 978건 통보



WTO TBT 통보문 현황

□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 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특정무역현안은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인 94건을 기록하였고 2014년 85건이 논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 TBT 대응사례 】

**노르웨이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 규제**

- (개요) 노르웨이는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농도에 대한 규제 시행(WTO 통보 없음, 시행일: '15.2월)
 - *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 (포장재도 포함), EU는 '15.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15.2.12일 공포 즉시 시행
- (애로 사항) WTO 통보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업계의 사전 대응 불가능, 이미 시장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 회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부재
- (대응 활동) 공식서한 제출 및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 개최('14.3, 6월)
- (대응 결과) EU 전역 시행일('15.8.21일)전까지 규제적용 면제키로 합의

**남아공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개요) 남아공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하는 규제 시행 예정(TBT 통보일: '14.2월, 시행일: '15.11, '16.2, '16.11월)
- (애로 사항) 규제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라벨링 세부 규정이 없어 규제 시행일전까지 우리 업계의 규제대응 불가
-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14.6, '14.11, '15.3월) 및 남아공 규제당국과 현지 면담개최*('15.5월)
 - * 참석기관: 주남아공대사관, KOTRA 현지 무역관, 우리기업, 남아공 규제당국(NRCS)
- (대응 결과) 우리업계가 과도한 규정으로 지적한 항목 철회('14.12월 개정) 및 6개월 규제시행일 유예키로 합의('15.8월 개정)
 - * 지속적 대응(의견 제출 6회, TBT 양자 3회) 및 현지 규제당국 면담 추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 규제

- **(개요)**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 통신기기, IT 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 인도네시아어로 된 제품라벨을 제품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 ('14. 4)
* 대상제품 對인도네시아 수출 : 9,100만불('12년)
- **(애로 사항)** 라벨링 규제는 스티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인, 인쇄,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제품 개발기간 및 비용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시행유예기간이 없어 업체들이 대응하는 데 시간 부족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STC 제기('14.6), 양자회의 개최('14.6) 등을 통해 스티커 부착방식 허용 및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
- **(대응 결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규제 적용을 하지 않으며, 규제 시행유예 합의

에콰도르 화장품류 라벨링 규제

- **(개요)**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헤어제품류 및 세정제품류 등에 대한 강제규제를 개정 시행한다고 WTO 통보('13. 11)
- **(애로 사항)** 규제 시행이후 통보하여 우리나라 업계의 준비기간이 없었으며, 에콰도르가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의 제3자 적합성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에콰도르에는 시험소가 없어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
-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STC 제기 및 양자회의 개최('14. 3),
- **(대응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 허용 및 시행유예 합의